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2941호, **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」**은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Ⅱ.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

1. 제안 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5호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8조의2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)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생태전환교육기금 설치)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·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Ⅲ. 검토의견

○ **생태전환교육기금**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’21년 7월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0조가 정한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신설·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
○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‘지방기금법’)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
-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①기금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, ①기금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으며,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

⑴ 기금 조성 개요

○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’22년도에 10억 600만원을 조성계획하고, 5억원을 집행계획하여 ’22년도 말 조성액을 5억 600만원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기금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2021년도말 조성액 ①	2022년도		2022년도말 조성액 ④=①+②-③
	조성계획 ②	사용계획 ③	
-	1,006	500	506

⑵ 기금 수지현황

○ ’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기금수지총액은 10억 600만원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중 **수입계획**의 경우, ①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(10억원)과 ②예금이자수입(600만원)을 수입계획하고,

〈표 3-2〉 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 입 계 획	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2022년도 수입액	2021년도 수입액	증 감	비율	항 목	2022년도 지출액	2021년도 지출액	증 감	비율
합 계	1,006	-	1,006	**순증**	**합 계**	1,006	-	1,006	**순증**
교특회계 전 입 금	1,000	-	1,000	순증	비융자성 사 업 비	500	-	500	순증
이자수입	6	-	6	순증	예 치 금	506	-	506	순증

〈표 3-3〉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과 목				2022년 수입액 (A)	2021년 수입액 (B)	증 감 (A-B)
장	관	항	목			
합 계				1,006	-	순증
내부거래				1,000	-	순증
	전입금			1,000	-	순증
		전입금		1,000	-	순증
		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1,000	-	순증
자체수입				6	-	순증
	이자수입			6	-	순증
		이자수입		6	-	순증
			예금이자수입	6	-	순증

○ 수지균형에 따라 **지출계획**의 경우, 정책사업인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중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원을 지출계획하고, ②**예비비 및 기타**로 5억 6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제출함

- ①**교수-학습활동지원**중 기타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은 농촌유학사업으로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에서 초·중학생들에게 농촌유학 및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타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3-4〉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업내역	2022년 지출액	2021년 지출액	증 감
합 계					**1,006**	**-**	**순증**
유아및초중등교육					500	-	순증
	교수-학습활동지원				500	-	순증
		교육과정운영			500	-	순증
			교육과정운영지원		500	-	순증
				생태전환교육기금	500	-	순증
				기타특별회계전출금	500	-	순증
예비비					506	-	순증
	예비비및기타				506	-	순증
		예비비및기타			506	-	순증
			내부유보금		506	-	순증
				예치금	506	-	순증

○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한 바,

- 동 조례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출계획한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의 경우, 타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
- 만일 동 지출계획과 같이 타 시·도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, 관련 조례중 타 시·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○ 아울러 「지방재정법」에는 “회계와 기금간, 회계 상호간 그리고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” 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

- 서울시교육청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에 따른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**을 운용하지 않아 이른바 '우회 전출'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

⑶ 기타 검토

1)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의 역할 필요

❍ 행정안전부의「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전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와 사전협의·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집행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
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때 지출계획의 사업구조 및 과목 설정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상시적으로 준수되지 않아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지적과 개선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바,

-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다는 반증으로 향후 각 기금운용계획안중 수입·지출계획의 사업구조 및 과목 설정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,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금총괄부서(기금총괄관리관) 차원의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안내 및 개별 기금운용부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2) ‘예치금’ 에 대한 사업별 예산구조 수정 필요

○ 동 기금의 경우, 정책사업 ‘**예비비 및 기타**’ 의 세부사업중 ‘예치금’을 신설하여 5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

○ **예치금**은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,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
❍ 그러나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지출계획중 ‘분야·부문’은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이 정하는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고,

-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정책사업에 ‘**재무활동**’ 을 신설하고,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는 ‘**재무활동**’의 하위범위로 **보전지출**(예치금)이 해당되기에 예치금 항목은 ‘**예비비 및 기타**’가 아닌 ‘**재무활동**’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 교육부의 「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는 **재무활동**의 하위 단위사업으로 ‘**보전지출**’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예치금의 역할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「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‘**보전지출**’이 신설 되도록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❍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적합한 사업별 예산구조에 부합하여 지출계획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개정되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기준을 검토하고, 제도가 미흡할 경우 편성전 개선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

〈표 3-5〉 예산구조 수정 필요내역

지 출 계 획 (제 출 안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 업 내 역
[160]예비비					
	[161]예비비				
		[01]예비비및기타			
			[01]예비비및기타		
				예치금	
					예 치 금

지 출 계 획 (수 정 의 견)					
분야	부문	정책	단위	세부	사 업 내 역
[050]교육					
	[054]교육일반				
		[03]재무활동			
			보전지출		
				예치금	
					예 치 금